

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

의안 번호	2021 - 12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자	거창군수
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- (재)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거창군 출연기관으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수행을 목적으로 하며
-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은 실험생산을 진행하며 특화제품개발 및 각종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실험생산 공장으로
- 대상지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무상사용하여 왔음

2. 주요내용

가.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개요(건물)

- 위 치 :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-22번지
- 건물면적 : 392m²
- 소 유 자 : 거창군
- 사 업 비 : 451백만원(기계설비 309, 건축물 138, 부대시설 등 4)
- 사용·수익기간 : 2022. 1. 1. ~ 2024. 12. 31.(3년간)
- ※ 토 지 : 개인 토지(5,500천원/년, 소유주 : 진산 김치성)

나.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세부내역

- ◎ 사용료 감면(면제) : 5,782,622원
- 건 물 : 115,640,000원(시가표준액)
- 기계설비 : 12,447원
(최초 거래가격 309,000,000원 × 13년 경과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적용)
- 사용료 산출 : 115,652,447원 × 50/1,000(요일) = 5,782,622원

- 관련 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
‘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’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
‘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’

다. 추진경과

- 2008. 1. ~ 2021. 12. 31. 무상사용
- 2021. 10. : 재산관리관(미래전략과) 협의

라. 향후계획

- 2021. 12. : (재)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사용허가 신청
- 2021. 12. : 사용허가(재산보존 책임, 원상태로 반환 등)
- 2022. 1. 1. ~ 2024. 12. 31. : 3년간 무상사용

마. 기대효과

- (재)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연구에 필요한 친환경기능석재공장을 무상사용하여 거창화강석만의 차별화·고부가가치화 제품의 연구·개발에 매진

3. 관련법규 및 조례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24조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, 제17조, 제31조
- 지방세법 제4조 제2항
-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
- 법인세법 제23조
-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
-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 제15조
-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

4. 참고사항

- 위치도 및 현황사진 : 붙임 1
- 관계법령 : 붙임 2

위치도 및 현황사진

□ 위치도



사진설명 : 위천면 남산리 105-22번지



사진설명 : 위천면 남산리 105-22번지

관 계 법 령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0조(사용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21조(사용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

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.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2조(사용·수익허가)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

3.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7조(사용료 감면)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제31조(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)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.

3. 제1호(토지) 및 제2호(주택) 외의 재산: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.

지방세법

제4조(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) ② 제1항 외의 건축물(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), 선박,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, 수입가격, 신축·건조·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, 구조, 용도,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.

지방세법 시행령

제4조(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)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.

4. 기계장비: 기계장비의 종류별·톤수별·형식별·제조연도별 제조가격(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)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.
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

제15조(사용·수익허가)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·수익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1. 사용 목적 및 기간
2.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

3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
4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
5. 허가조건
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

제17조(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) ① 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.

1. 사용·수익 또는 대부 목적
2. 사용·수익 또는 대부 기간
3. 사용료 또는 대부료
4. 도면
5. 그 밖에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,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